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양옥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5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1. 3.

발 의 자: 양옥희 의원

찬 성 자: 황선화 의원, 이민욱 의원,
김현주 의원, 오천수 의원,
김종곤 의원, 남연희 의원

1. 제안이유

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대상자 범위에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조문을 추가 신설하여 예우 및 지원 대상자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 및 운영 목적에 충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예우 및 지원대상에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를 추가함(안 제3조)
- 나. 그 밖에 오기사항 등 정비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나. 협조부서: 복지정책과

다. 기타

1) 예산조치: 관련 부서와 협의

2) 입법예고(2021. 4. 2. ~ 4. 7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,”를 “두고 있는”으로, “사람 및”을 “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제3호 및 제4호”를 “제3호, 제4호 및 제5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<u>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</u>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 및 단체</u>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10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와 <u>제3호 및 제4호</u>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4조(환수조치) ① (생략)</p>	<p>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<u>두</u> <u>고 있는</u> ----- ----- --- <u>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</u> 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의 <u>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</u></p> <p>제10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----- <u>제3호, 제4호 및 제5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환수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,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.

② ----- 제1항에 -----

-----.

< 관 계 법 령 >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
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
3의2. 희생·공헌자의 발굴

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
5. 그 밖에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
□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·18민주화운동의 민주·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